

##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지방개량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을 말하며,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, 개축, 신축(공영주택 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신축은 제외한다)"을 "농촌 불량주택개량사업"으로 한다.

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을, 제2항 및 제3항으로하고 제4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④농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을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같다.  
징수관:건설도시국장, 편입징수관:주택과장, 수입금출납원:농촌주택계장으로한다.

제6조중 "시장,군수가"를 "읍,면,동장이"로하고, "도지사"는 시장,군수"로 한다.

제7조제1항중 "지방개량 및 주택개량"을 "농촌주택개량"으로하고, 동조 제2항중 "도지사"를 "시장,군수"로 하며,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제3항중 "상환법"을 "상환방법"으로 한다.

1. 이 율: 년리 8%
2. 상환방법: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

제6조"별지 제1호 서식"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